개선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삼성자산운용

2. 조치일 : 2024. 2. 27.

3.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개선사항 2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고객위험평가 관리체계 미흡

회사는 내규에 따라 위험평가모형을 마련하고 고객위험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다.

㈎ 위험평가모형 구성 항목(고객유형, 상품, 국가 등) 중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의 종류, 투자 대상 등에 따른 구분 없이 모든 상품이 일괄적으로 중위험으로 평가되고 있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이 적정하게 측정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 위험평가모형이 고객의 위험, 상품의 위험 등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거래 고객의 자금세탁위험이 적정하게 식별 및 평가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회사는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도가 적정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고객위험평가모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고객위험평가 업무 운영의 적정성에 대하여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2)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내부통제 체계 미흡

회사는 내규에 따라 전반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있다.

㈎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실시하면서 사외이사 등 일부 임직원을 누락하거나 미이수자에 대한 보강 교육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전반적인 교육 체계가 미흡하다.

따라서 회사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교육 관련 운영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는 상품개발실무협의회에 회부된 상품을 대상으로 상품 출시전 자금세탁관련 위험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자금세탁위험이 내재된 신상품이 상품개발실무협의회에 회부되지 않는 경우 위험평가가 누락될 수 있고 신상품 위험평가 시 구체적 기준 없이 자금세탁위험의 유무만을 기재하고 있는 등 위험평가가 자의적으로 수행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회사는 자금세탁위험이 내재된 상품에 대한 위험평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위험평가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는 연 1회 감사담당 부서에서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한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독립적 감사업무를 위한 세부절차와 운영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감사업무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되지 않거나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회사는 독립적 감사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지도록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